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2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정준호·박정현·정성호

김성환 · 강준현 · 양부남

민병덕 • 이강일 • 김현정

이연희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 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 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하여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2조(보험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로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하 "미수령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수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②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보험금의 한</u>		
	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u>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하여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